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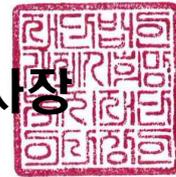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공고 제2021-1호

## 2021년 나눔공모사업 공고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서는 거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자 나눔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22일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 1. 사업개요

사업명	분야	예산규모	사업기간
나눔공모사업	제안주제 자유주제 기능보강	90,000천원	2021년 4월 ~ 11월 (단, 제안주제 신청의 경우 사업기간 조정가능)

### 2. 신청자격

- 거제시 소재의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비영리 법인·기관·단체·시설(개인 신고시설 포함)

※ 제외대상

- 3년 연속 지원한 동일(유사) 사업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장을 임명하는 기관·

단체 등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사업
-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수탁운영 시설·기관

### 3. 지원내용

구분	내 용	예산규모	신청한도금액
합 계		90,000천원	
제안 주제	2년 이상 계획하는 다년도 사업으로 사업 참여자의 의미 있는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파급력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향후 모델화 가능한 사업	40,000천원	기관별 최대 20,000천원 이내
자유 주제	성과목표 달성을 통해 사업 참여자의 의미 있는 변화를 꾀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변화의 기초를 다지는 사업	25,000천원	기관별 최대 500만원 이내
기능 보강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및 활동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 등 (단, 임차보증금, 인건비, 관리운영비, 차량지원, 소모품 구입 등은 신청불가)	25,000천원	기관별 최대 500만원 이내

※ 1개소 1사업 신청

#### 4.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1.3.15(월) ~ 3.18(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ghwf@hanmail.net) 접수
- 제출서류

구 분	수량	비 고
① 공문	1부	· 직인 포함
② 나눔공모사업 신청서	1부	
③ 기관현황	1부	
④ 사업계획서	1부	· 기능보강 신청의 경우 - 견적서(비교견적 포함) 제출 - 전체예산의 10%이상 자부담 필수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⑥ 기타(해당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시설신고증 사본 -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별도 신고증 없이 운영법인으로 소속되어 운영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제출 (분사무소 포함하며 최근 3개월 이내) · 시설신고증은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류 제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허가증, 지자체 공문 등)

#### 5. 심사 기준 및 방법

- 심사기준 : 기관의 신뢰성 및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적합성, 필요성 및 적절성, 기타 일관성 및 실현가능성 등 종합고려
- 심사과정 : 예비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심사과정을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의 평균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며 적합한 사업이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6. 기타 및 유의사항

- 1개소 1사업 신청 원칙
- 최초 지원을 포함하여 동일사업으로 3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함
-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 중 사업장의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기관 및 시설은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누락시 심사에서 탈락되며 신청서 등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허위기재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기관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선정여부와 관계 없이 반환하지 않음
- 수행기관 선정 후라도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선정취소 또는 환수함
- 최종 선정기관에 대해 지원금액 등 조정될 수 있으며 추후 조정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자부담 재원으로 경상운영보조금은 편성불가함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하여 작성
- 예산계획은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용만 신청하게 되어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실인원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임
- 제안주제 신청 시 연단위 사업평가를 통해 차년도 연속 지원여부 결정
- 기능보강의 경우 전체예산의 10%이상을 자부담으로 의무편성
- 사업계획서 작성시 본문 내용은 글씨체 **굴림, 11포인트로 작성**하며 한글파일로 제출

## 7. 사업일정

일 자	내 용	비 고
'21.2.22(월) ~ 3.18(금)	· 공고 홍보 및 안내	
'21.3.15(월) ~ 3.18(목)	· 신청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 접수	
'21.3.22(월) ~ 3.24(수)	· 심사	
'21.3.25(목) ~ 3.31(수)	· 선정기관 발표 · 전달식 · 조정사업계획서 접수	
'21. 4월 ~ 11월	· 사업수행 · 중간점검 및 현장모니터링	
'21.12.10(금)	· 결과보고 및 정산서류 제출	
'21.12.13(월) ~ 12.31.(목)	· 사업 결과보고회 및 심사 ·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서류 검토 및 평가	

※ 사업일정은 추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등 별도 공지

## 예산편성기준표 예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	비고
강 사 비	특별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현직 장/차관(급) 이상</li> <li>· 전/현직 대학총장(급)</li> <li>· 전/현직 국회의원</li> <li>· 대기업 총수(회장) 또는 국영기업체장</li> <li>·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 시민단체, 기업교육 전문직 종사자</li> <li>·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로 재단이 인정하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시간 최대 350,000원</li> <li>· 초과 매시간당 150,00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급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동일법인이라도 사업장의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타 기관의 직원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li> <li>* 강의에 필요한 교재의 원고료, 강사 교통비(실비)는 필요사유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li> </ul>
	1급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li> <li>· 인간문화재, 유명예술인 및 종교인</li> <li>· 정부출연 연구기관장</li> <li>·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li> <li>·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li> <li>·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5급 공무원</li> <li>· 사회복지 기관시설장</li> <li>·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시민단체, 기업교육 전문직 종사자</li> <li>· 기타 재단이 인정하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시간 최대 250,000원</li> <li>· 초과 매시간당 150,000원</li> </ul>	
	2급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li> <li>· 전·현직 4/5급 공무원</li> <li>· 중소기업체 임원급</li> <li>·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li> <li>· 인간문화재유명예술인 등 보조출연자</li> <li>· 통계이론, SAS, SPSS 등의 전문가</li> <li>· 박사학위소지자</li> <li>· 특별강사, 일반 1급 및 일반 3급을 제외한 자</li> <li>· 사회복지 기관시설 중간관리자로서 관련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li> <li>·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시민단체, 기업교육 전문직 종사자</li> <li>· 기타 재단이 인정하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시간 최대 230,000원</li> <li>· 초과 매시간당 120,000원</li> </ul>	
	3급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li> <li>· 전임이외의 외래시간 강사</li> <li>·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li> <li>· 체육, 레크레이션 등 전문강사</li> <li>· 사회복지 기관시설 중간관리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가 없는 자</li> <li>·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시민단체, 기업교육 전문직 종사자</li> <li>· 기타 재단이 인정하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시간 최대 170,000원</li> <li>·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li> </ul>	

항 목	기 준	사용한도	비고
원고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4용지 1매 기준</li> <li>- 글자크기 13p, 줄간격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li> <li>-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3면을 A4 1면으로 산정</li> <li>-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1면으로 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000원</li> <li>· 시간당 6매까지만 인정</li> <li>· 최대 30만원까지 지원</li> </ul>	
식사비	· 1인 기준	· 10,000원	
다과비	· 1인 기준	· 4,000원	

※ 위의 예산편성기준표는 최대 지급 기준임

※ 강사비 : 같은 날짜에 동일대상에게 동일내용(주제)을 강의하는 경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강의를 하여도 두 번째 시간부터는 초과시간으로 지급